

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[별표 1]

[시행일]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

1.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: 2025년 1월 1일

2.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: 2026년 1월 1일

장기 생산목표율(제4조제1항 관련)

1. 공공의무생산자의 장기 생산목표율

가. 2025년: 50%

나. 2030년: 50%

다. 2035년: 60%

라. 2040년: 70%

마. 2045년: 80%

바. 2050년: 80%

2. 민간의무생산자의 장기 생산목표율

가. 2026년: 10%

나. 2030년: 10%

다. 2035년: 50%

라. 2040년: 60%

마. 2045년: 70%

바. 2050년: 80%